

##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 차 강 석

(본회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본회는 지난 4월 8~9 양일간 1977년도 설무사회의를 본 회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는 12개 지회상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간부 능력개발훈련” “조직의 처리법” “회계전반에 관한 건” 등의 톡강도 있었는데 다음의 글은 본회 고문이며 공인회계사인 차강석선생의 톡강 “비영리 법인의 회계와 세무”의 전문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자 게재해 본다.

<편집자 주>

### 1. 서

### 2. 예산결산

- 1) 재무제표의 개념
- 2) 공익단체(비영리법인)의 경리 : 판정회계 방식
- 3) 공익단체(비영리법인)의 경리 : 회계조직의 개선방향
- 4) 예산결산은 경상적 수입지출과 자본적 수입지출로 구분하여 행함이 요청된다  
—예산결산의 개선방향—

### 3. 세무

- 1) 국세
  - ① 영업세, 법인세
  - ② 상속세(증여세)
  - ③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와 연말 정산
  - ④ 법정원천징수의무와 거래보고 의무

### ⑤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 2) 지방세

- ① 취득세 재산세
- ② 면허세
- ③ 사업소세

### 4. 결 론

### 1. 서

일반적으로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두가지의 경우로 사용된다. 광의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개념으로서 공익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의 3종의 법인이 이에 포함한다.

- (1) 민법 제32조의 법인

(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3) 사회복지법인

협의의 경우는 민법제32조 법인만을 뜻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이에 속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의 개념을 비영리법인이라 표현하여서 다음의 4종이 포함 규정되고 있다.

(1) 민법제32조의 법인

(2)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는 대부분 민법제32조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여성단체의 경리에 대한 현황을 고찰해 보면 예산, 결산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고유 목적사업 이외의 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을 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파세되는 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경리대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 2. 예산, 결산

### 1) 재무제표의 개념

먼저 공익단체의 경리에서 요청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해설한다.

① 대차대조표

이것은 일정시점의 자산(차변계상) 부채 및 자본(대변계상)을 한표에 나타내어 재정상태를 표시한 것이며 자산=부채+자본의 등식에 의하여 작성된다. 다만 공익단체에서는 위자본 대신 기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②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만의 명세를 표시한 목록으로서 공익단체의 모든 자산 및 부채 및 종류, 성질, 기한등으로 분류하여 수량 금액등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자산회계에서 부채회계를 공체하여 순재산을 표시한다.

이 점 재정상태를 종괄적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와 다른 점이다.

### ③ 예산결산대조표

예산결산대조표는 예산의 집행상황을 표시한 결산대조표이다. 이 경우 예산의 내용은 경상적 수입지출과 차본적 수입지출로 구분 편성되어야 한다.

④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는 예산중 경상적 수입지출에 한한 결산서이다.

그러므로 수지결산서는 전항의 예산결산대조표중의 경상적 수입지출의 결산액과 일치한다.

공익단체의 경우도 역시 결산서의 총집은 대차 대조표와 수지결산서인 것이다.

⑤ 잉여금처분제산서

잉여금처분제산서는 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당년도 잉여금을 각종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 그처분상황을 표시한 계산서이다.

### 2) 공익단체의 경리—관청회계방식

현재 여성단체의 회계는 통일된 회계방식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예산 결산의 제도가 금전소비회계인 관청회계방식과 이에 유사한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산은 단순히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론되어지고 적정한 수지 상황이나 재정상태의 파악은 불가능하다.

특히 공익여성단체가 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 또는 관청회계방식의 채용으로는 합리적인 결산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에 공익여성단체가 채용하고 있는 관청회계방식에 대한 불합리하고 모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① 현금의 수입 지출의 사실에 의하여 기록계산을 행하므로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의 증감별동에 대해서는 회계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②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물품구입등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지불을 연기한 상태가 수지결산서상 표시되어 결산이 행해지지 않는다.

③ 통상 「지출예산」에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현

금지출항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금수지는 흑자가 발생하여 실제적으로 차산의 잠식을 초래하게 된다.

④ 설비기계, 기구비품등의 구입비 또는 장기차입금의 상환등 자본적 지출에 속하는 지출이 많아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 경우 차본수지의 결산서만으로 수지상황의 질의 양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⑤ 경비적지출(수익적지출)과 차본적 지출의 구별없이 모두 지출예산에 의한 지출을 함으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차본의 기록과 결산을 행할 수 없다.

⑥ 결산은 수지예산에 대한 수지결산단을 행하므로 재산목록이나 대차대조표는 작성되지 않으며 작성한다면 회계장부외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 3) 공익단체의 경리(회계조직개선방향)

공익단체의 경우 수지상황을 명확히 표시하고 재산상태 또는 재정상태를 적정히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금의 수지는 물론이며 채권, 채무등의 변동을 회계조직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회계제도의 도입 채용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는 먼저 예산경리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회계제도를 채용할려면 현금 주의에 의한 괜찮회계방식을 지양하고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형식의 회계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계제도하에서의 결산은 예산에 대한 결산과 회계결산이 동시에 행하여져야 하며 이는 회계조직에 의하여야만 행하여지는 것이다.

회계장부에 의해서 작성되는 결산서는 다음과 같이 5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① 예산결산대조표
- ② 수지결산서
- ③ 대차대조표
- ④ 재산목록
- ⑤ 잉여금처분계산서

### 4) 예산, 결산은 경상적 수입지출과 차본적 수입지출로 구분하여 행함이 요청된다(예산결산 개선방향)

공익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방식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함은 물론이지만 우선 예산, 결산이 경상적 수입지출과 차본적 수입지출로 구분 시행됨이 요청된다. 그리고 경상적 수입지출이라 함은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지출을 말한다. 기업회계에 있어서 손익수지(수익적 수입지출)에 상당한다.

다음에 차본적 수입지출이라 함은 공익단체의 경상적 수입지출을 제외한 수입지출을 말한다.

기업회계에 있어서 차본거래에 기인한 차본적 수입지출에 상당한다.

#### ① 예산

경상적수입지출과 차본적수입지출로 구분, 평성 한다.

경상적수입지출(수익적수입지출)……회비입회비 사업수입합수입(이상수입), 행정비 사업비 예비비(이상지출)

차본적수입지출(투자적수입지출)… 차입금 출자금, 재산수입(이상수입), 전설개량비, 비품구입비, 차입금상환(이상지출)

#### ② 결산(서)

##### (가) 예산결산대조표

공익단체의 경우는 결산과 같이 예산도 종시되는 입장이다. 예산과 이의 결과인 결산과를 비교대조하는 예산결산대조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의 경우 결산서의 중심은 수지결산서와 대차대조표이다.

예산결산대조표는 단순히 예산의 집행상황을 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 (나)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는 총계정원장의 경상적수입 및 차출계정을 모두 집합한 결산서이다.

수지결산서의 수입은 예산결산대조표의 경상적 수입의 결산액과 일치하며 지출은 예산결산대조표의 경상적지출의 결산액과 일치한다.

##### (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공익 단체의 경우와 일반기업회계의 경우가 동일하다.

다만, 공익 단체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

인)에 의해서 사업을 행하므로 이를 위한 재원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에서 기본재산과 운용재산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으나 재단(법인)의 경우는 이의 구분이 필요하다.

#### (래)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일정시점에 있어서 재산의 명세목록으로서 공익단체의 모든 자산·부채를 종류별로 기한 등으로 분류하고 수량·가격 등을 개별로 기재하여서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를 공제하여 순재산을 표시한다.

#### (마) 임여금처분계산서

임여금처분계산서는 결산에 의해서 발생한 당년도 임여금을 각종적립금에 적립한 경우의 처분상황을 표시한 계산서이다.

따라서 일반의 기업회계의 임여금계산서와 달리 없다. 다만 영리법인에서는 임여금을 출자자나 주주에 분배할 수 있으나 공익단체(법인)에서는 그 본질에서 볼 때 행할 수 없는 것이다.

### 3. 세무

공익단체(법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현행 세법에 의하여 납세 및 원천징수 보고의무등의 세무 문제가 발생되는바 이점 특히 유의함이 요청된다.

#### (1) 국세

##### ① 영업세 법인세

공익단체의 경우라도 다음의 영업을 하면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다.

광산업 제조업 전기ガ스 및 수도업 전설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서어비스업

그리고 공익단체가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ガ스 및 수도사업, 전설업, 도매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보관 및 통신업, 금융보

(참조) 부가가치세법이 1977.7.1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영업세법은 1977.6.30로서 폐지되게 된다.

1977. 6. 30까지(폐지)	1977. 7. 1부터
영업세 불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카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통음식세	

협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

(나) 의료법(다면 대학부속병원 제외)

(다) 비영업내금으로 인한 수입

(e) 계속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접풀업, 학원, 강습소, 교습소, 상담소, 직업소개소, 조류의 사육, 양어, 화초재배, 출자한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 등)

한편 개정된 조세 감면 규제법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학교법인은 1977년부터 법인세 문제는 소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② 상속세(증여세)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출연받은 공익단체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ㄱ)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법인세 등 공제후)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 부터 1년내에 직접공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ㄷ)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총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  
[예·사용한 분은 제외] 평가액]×

[사업년도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 50%

③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와 년말정산

공익단체에 근무하는 임원,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급여, 보조,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면  
세급여액은 월급의 경우 년 540,000원, 일당의  
경우 일 6,000원이하) 그런데 위의 급여소득 이  
외에도 다음사항이 통소득에 포함된다. 기밀비,  
공로금, 물가수당등 급식 주택 피복수당, 보건  
연구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식사대,  
피복비 등 그리고 임원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대  
하여는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퇴직급여 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급여} - (\text{퇴직급여} \times \frac{50}{100})$$

- 퇴직소득공제액(30만원)

세 액 =  $\frac{\text{퇴직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액(주1)}}{\text{근속년수(주2)}}$

× 기본세율 × 근속년수

- (주) 1. 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에서의 공제부족액”  
을 말하며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초공제 년 24만원
  - (2) 배우자공제 년 18만원
  - (3) 부양가족공제 년 12만원(1인당)
  - (4) 장애자공제 년 12만원(1인당)
2. 근속년수의 계산은 년단위로 하여 1년미만  
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음에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은 당해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을 하게되는 이유는  
다음 원인에 연유된다.

(1) 인적공제인 소득공제신고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정수의 부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잘못 했을 경우

(3) 근로소득인 월급여액의 수령금액과 간이세  
액표의 계급구분 적용시에 단수(1,000원미만)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

또한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은 첫째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부  
족액이 있는 경우, 둘째로 동일년도에 2회이상  
퇴직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참조) 상여금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  
하여 계산한다.

$$\text{세액} = \frac{(\text{상여액} - \text{상여특별공제액} + \text{지급대상기간의  
상여이외의 급여합계액})}{\text{상여이외의 월수}} \times \text{상의 해당세액} \times \text{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text{지급  
대상기간의 상여이외 급여의 산출세액}$$

- (주) 1. 상여특별공제액 : 월급여액의 년 400%와 년  
36만원중 적은금액
2. 지급대상기간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  
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  
는 때에는 1월로 한다.

④ 법정원천징수의 두와 거래보고의 두

세법상 법정원천징수의 두자는 공익단체의 경  
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법인 즉,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물품대금 또  
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물품을 판매 또는 인  
도하는 때) 그 가액의 1%를 상태방이 개인인 경  
우에는 소득세로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고 영업세는 그 거래상대자의 업종에 따  
라서 영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정  
수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축산  
업,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설업,  
도배업, 운송보관업, 부동산매매업을經營하는  
경우는 해당부분에 대한 거래보고의 두가 발생  
된다.

즉, 매월 수입할 수입금액에 관한 판매보고서  
와 매월 지급할 물품대금, 각종요금 사용료에 관  
한 지급보고서를 수입 또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

출하여야 한다.

한편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므로 동법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위의 법적 원천징수의무와 거래보고의무는 폐지된다.

(참조) 원천징수의 과세회피한 및 소액불징수

세 목	과세회피한	적 요
(1) 소득세 가. 종합소득		
(ㄱ) 균로소득	년 540,000원 이하	{기초공제 24만원 근로소득공제 30만원}
(ㄴ) 일급시간급	일 6,000원 이하	
(ㄷ) 이자소득	6월 18,000원 이하	분기 과세
(ㄹ) 배당소득	년 36,000원 이하	"
(ㅁ) 기타소득 다. 퇴직소득	매 견 5,000원 이하 년 600,000원 이하	장사료 등
(2) 거래원천소득 가. 소득세법인세 나. 영업세	월 20,000원 미만	1개월 간 거래 합계 월 20,000원 미만
		"

(5)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가 다음의 계산요령에 의하여 과세된다.

$$\text{양도차익} = \text{매매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설비비} + \text{개량비} + \text{자본적지출} + \text{양도비} + \text{양도소득공제}]$$
$$(\text{년 } 90\text{만원}) + \text{특별공제}(10\sim 20\%)$$

$$\text{산출세액} = \text{양도차익} \times 50\%$$

$$\text{납부세액} = \text{산출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10\% \text{ 신고납부세액공제})$$

(참조)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위산식에서 세율 25% 적용, 양도소득공제(년 90만원) 불적용, 신고 납부세액공제 불적용함.

그러나 공익단체(비영리법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

① 취득세, 재산세

공익단체(비영리법인)가 소유한 취득세, 재산세, 과세불건은 이를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는 보통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는 것이다 특히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범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범인의 비업두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하게 된다.

② 면허세

공익단체(비영리법인)가 그 사업의 경영을 전용하는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실비나 행위에서 생긴 소득금의 전액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공익단체(비영리법인)은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과세된다.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납기개시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종업원할은 매월 말 현재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세율은 재산할은 사업소연면적 1평당 500원, 종업원할은 종업원급여총액의 0.5%이다.

그런데 비과세 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 4. 결 어

이상에서 비영리법인의 경리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바와 같이 특히 다음 사항이 요약된다.

첫째,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방기식으로 회계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예산, 결산은 경상적 수입지출과 자본적 수입지출로 구분하여 행정이 균형적으로 요청된다.

세째, 세무에 대한 관심을 가일층 경주하여 역할한 과세를 피하여야 한다. 특히 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을 겸행하는 경우 세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가지 글으로 첨가할 것은 회계전문가에 의해서 회계제도가 개선되었다하더라도 임원진의 이해와 회계담당 실무자의 자질향상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